

예산총칙

제1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	계	7,806,812,954	234,204,389
일반회계		6,399,941,442	191,998,243
특별회계		1,406,871,512	42,206,146
	공기업특별회계	284,010,525	8,520,316
	① 상수도사업	143,161,459	4,294,844
	② 하수도사업	140,849,066	4,225,472
	기타특별회계	1,122,860,987	33,685,830
	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401,076,676	12,032,300
	② 수질개선특별회계	9,646,054	289,382
	③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	366,142	10,984
	④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	6,005,016	180,151
	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	190,280	5,709
	⑥ 교통사업특별회계	40,027,997	1,200,840
	⑦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	6,731,604	201,948
	⑧ 학교용지부담특별회계	13,522,808	405,684
	⑨ 산업단지특별회계	5,192,432	155,773
	⑩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	54,828,076	1,644,842
	⑪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	385,856,413	11,575,692
	⑫ 소방특별회계	199,417,489	5,982,525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 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(변경)조서는 “해당없음”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 와 같다.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,400,718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63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지방채 상환(원리금 등),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간 또는 타 비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제9조 금회 추경이후에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,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(이월 포함)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